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32
----------	------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5일 오현정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06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오현정 의원)

### 1. 제안이유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감염병의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감염병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정부 및 교육청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협력 및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감염병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또한 서울시민의 안전 보장과 감염병 대응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및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를 신설하여 서울시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음.

## 2. 주요내용

- 가. 감염병병원체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1항제7호)
- 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신설함. (안 제3조제1항제9호)
- 다. 기후변화, 저출산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안 제3조제1항제12호)
- 라. 시장은 서울시 교육청과 감염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3항)
- 마.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4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등과 같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신종·변이 바이러스 발생시 서울시의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법률 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됨.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및 예방에 대응하기 위해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sup>1)</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구체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감염병 발생시 서울시가 치료 및 확산 방지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청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개정안에서는 제3조 시장의 책무로 ‘감염병병원체의 수집 검사’, ‘감염병 정보 교류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방 대책’, ‘한센병에 대한 지원’,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

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비한 교육·훈련 및 동향파악'등의 내용을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추가 규정하고자 함.

###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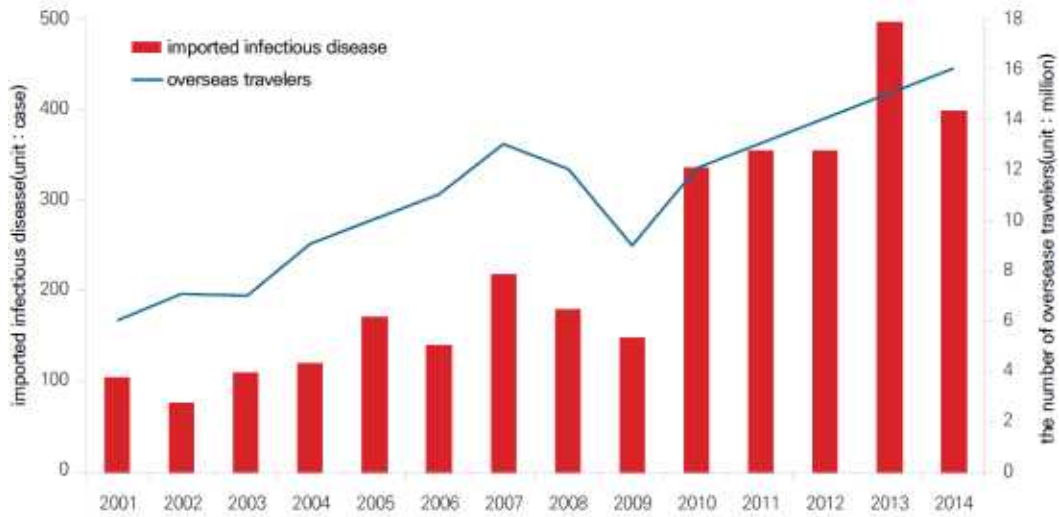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12. <u>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u></p> <p>&lt;신 설&gt;</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 ----- ----- -----.</p> <p>7. <u>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u></p> <p>9. <u>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u></p> <p>11. <u>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u></p> <p>12. <u>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u></p> <p>13. <u>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u></p>

<p>&lt;신 설&gt;</p>	<p>에 대한 지원</p> <p>15. <u>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u></p>
<p>&lt;신 설&gt;</p>	<p>16. <u>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u></p>

-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한 계획 준비 및 교육 훈련,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건수는 2000년 이후 연 300건을 넘기 시작하여 연 400건 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음. (그림 참조) 이후 2017년 국외유입 감염병 환자는 총 529명<sup>2)</sup>으로 증가하였으며, 내국인 출국자 또한 2,649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외여행객수의 증가 추이와 일치하고 있음.

2) 김인호, 박옥(2017). 2017년 국가별 국외유입감염병 환자 발생률 추정, 주간건강과 질병, 11-49

<그림> 해외 여행객 수와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건수



자료 : 조승희 외(2015), 2001~2014년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추이 분석

- 이와 같이 신종 감염병의 관리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지역내 질병역학의 차원을 넘어 국제보건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으로 감염병 관리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 내 협력에서 국제 협력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조례상에 국제협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제3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함으로써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 및 교육청 그리고 의료기관과의 정보의 공유 및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추가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 뿐 아니라 지난 메르스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에 있어 기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바 있음. 코로나-19와 같이 공공의료의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감염병 재난 위기 시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및 교육청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3 종합의견

- 최근 국가간 교역과 여행의 증가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협은 국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한정되지 않고 있음. 과거의 단순한 질병역학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제보건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대처 등의 경험을 통해 서울시에서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담아 확정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정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32
----------	------

발의년월일 : 2020년 05월 25일  
발 의 자 : 오현정, 김제리, 이정인,  
김광수, 송도호, 조상호,  
김인호, 박순규, 김화숙,  
양민규, 이병도, 홍성룡,  
김상훈, 이동현, 김경영,  
최웅식 의원(16명)

## 1. 제안이유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감염병의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감염병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정부 및 교육청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협력 및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감염병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또한 서울시민의 안전 보장과 감염병 대응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및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를 신설하여 서울시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음.

## 2. 주요내용

- 가. 감염병병원체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1항제7호)
- 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신설함. (안 제3조제1항제9호)
- 다. 기후변화, 저출산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안 제3조제1항제12호)
- 라. 시장은 서울시 교육청과 감염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3항)
- 마.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4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역 대책”을 “방역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염병환자 등”을 “감염병환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집·분석”을 “수집·분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조사·연구”를 “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전문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중전의 제9호) 중 “감염병예방”을 “감염병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중전의 제11호) 중 “정보수집”을 “정보 수집”으로, “발간(매뉴얼을 포함한다)”을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

## 구 및 예방대책 수립

-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9.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해외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과 훈련

<신 설>

11.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매뉴얼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4. 감염병 예방 -----

--

<삭 제>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7. -----

----- 정보 수집-----

-----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② (생략)

<신설>

<신설>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의 지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